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102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형도면 변경(정정) 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4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3호(2020.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5호(2020.07.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6호(2020.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02호(2021.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4호(2021.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6호(2021.07.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2호(2022.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6호(2022.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6호(2023.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0호(2023.03.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7호(2023.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0호(2023.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0호(2024.02.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2호(2024.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48호(2024.09.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4호(2024.1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22호(2025.09.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일

성 북 구 청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없음)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1,314,775.3	-	1,314,775.3	-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A	25 ~31	집산 도로	676	상월곡동 23-112	장위동 233-30	일반 도로	-	서고시48 (24.09.19)	장월로
기정	중로	1	A	25 ~29.5	보조 간선	1,348 (250)	장위동 64-89	장위동 310-22	일반 도로	-	충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8-238	장위동 74-54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3	A	15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소로	1	B	10	국지 도로	270	장위동 68-63	장위동 68-1110	일반 도로	-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3	D	6	국지 도로	189	장위동 68-1320	장위동 74-223	일반 도로	-	서고시110 (24.02.29)	
기정	소로	3	C	4	국지 도로	162	장위동 68-39	장위동 74-208	일반 도로	-	서고시110 (24.02.29)	

※ 정정사유 : 소로 1-B 시설 및 지적 선형간 일부 도면상 오기를 정정하는 사항임

2)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3)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4)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아.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변경없음)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차.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카.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이미 정비계획 결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며, 금회 같은법 제13조제3호에 의거 정정 고시되는 사항으로 신규(변경) 결정사항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장위10구역	성북구 장위동 68-37일대	91,362.0	-	91,362.0	100.0	-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기반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A	25 ~31	집산 도로	676	상월곡동 23-112	장위동 233-30	일반 도로	-	서고시48 (24.09.19)	장월로
기정	중로	1	A	25 ~29.5	보조 간선	1,348 (250)	장위동 64-89	장위동 310-22	일반 도로	-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8-238	장위동 74-54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3	A	15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소로	1	B	10	국지 도로	270	장위동 68-63	장위동 68-1110	일반 도로	-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3	D	6	국지 도로	189	장위동 68-1320	장위동 74-223	일반 도로	-	서고시110 (24.02.29)	
기정	소로	3	C	4	국지 도로	162	장위동 68-39	장위동 74-208	일반 도로	-	서고시110 (24.02.29)	

※ 정정사유 : 소로 1-B 시설 및 지적 선형간 일부 도면상 오기를 정정하는 사항임

나.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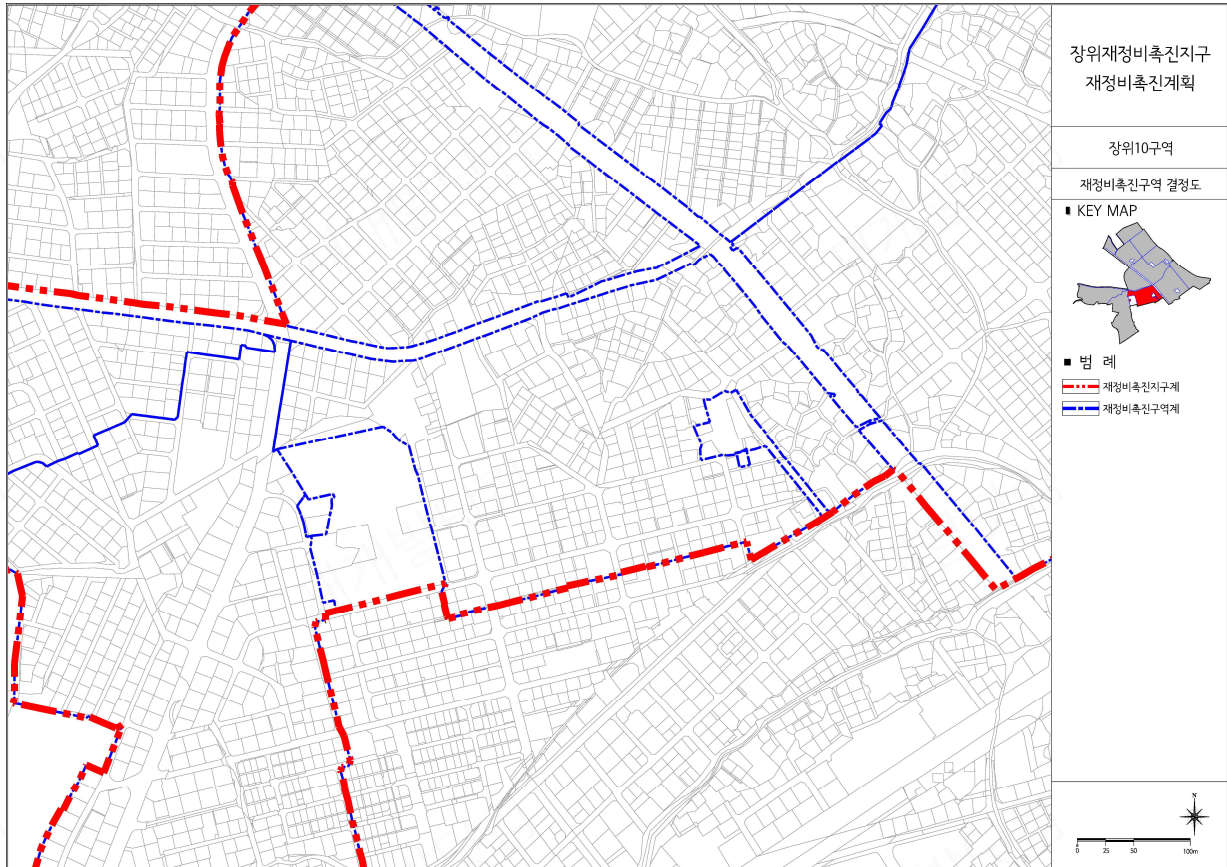
다.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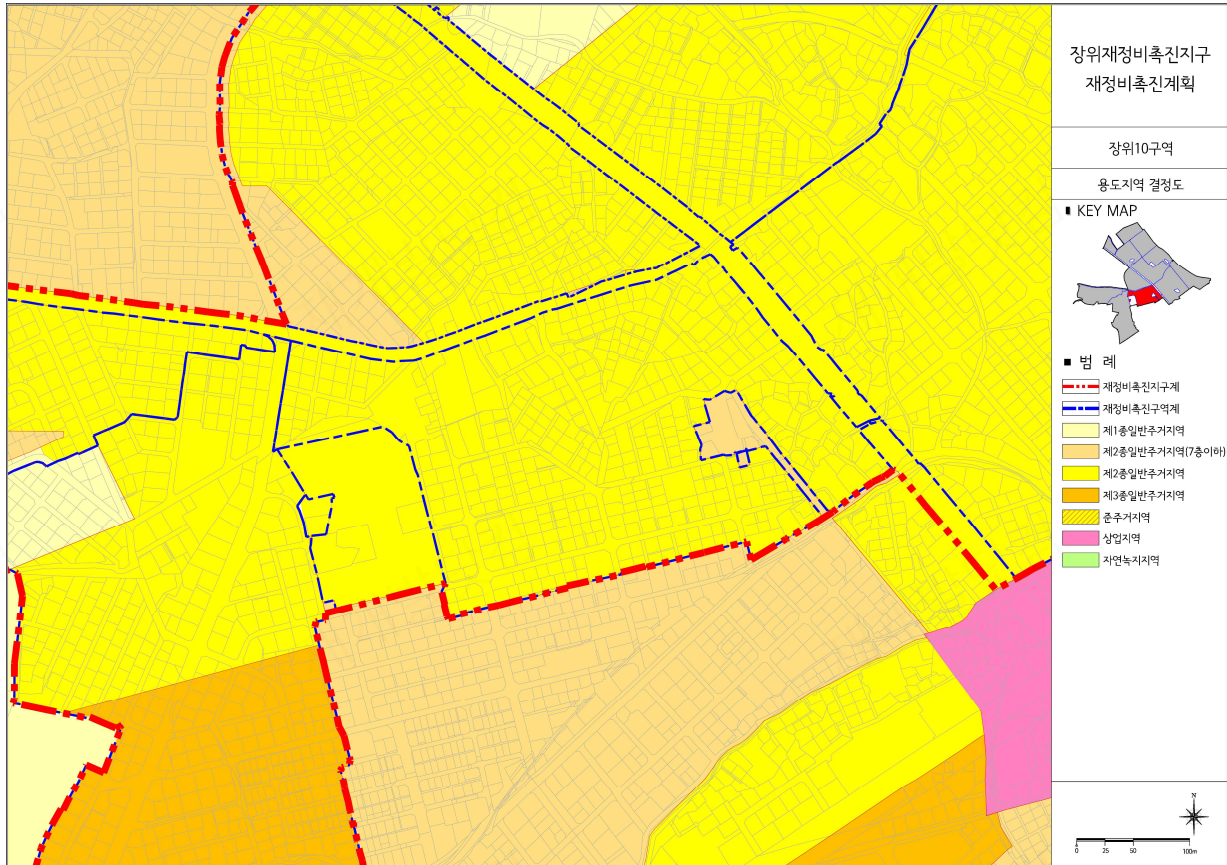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사항은 붙임(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총괄)고시) 및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02-2133-7223)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02-2241-283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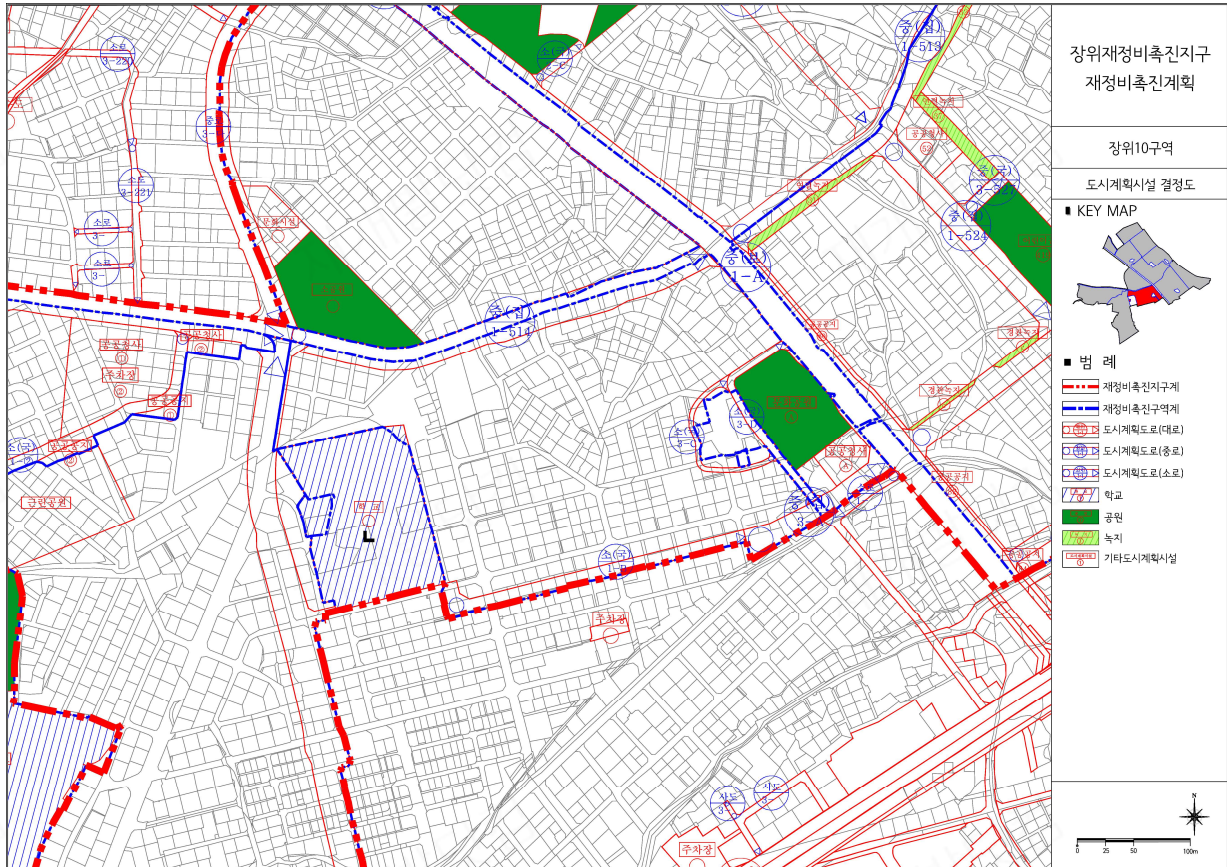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정정사항)]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정정사항)]

